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성명재*·박기백**

요약문

2006년 현재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13.64%, 민간이전소득 효과를 아우른 총효과는 17.69%(0.32890→0.27298)로 추정된다. 개별 항목별로는 소득세와 교육급여가 3.52%p와 4.08%p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반면, 소비세는 -0.37%p로 분배구조를 소폭 악화시킨다. 모의실험 결과, 소득세 증세를 통해 교육지출을 확대하면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순수혜 계층도 하위 70%에 이르러 정치경제적으로 채택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저소득층의 수혜집중도가 높은 정책은, 비록 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만, 순수혜 계층이 좁기 때문에 정치경제학적으로는 채택가능성이 낮아진다.

핵심주제어: 소득분배, 조세, 현금·현물급여, 정책 모의실험
JEL 번호: D3, H2, H5, I3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성장의 둔화, 개방화의 진전,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지출의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둔화된 성장, 개방화·세계화 및 고령화는 시장소득(market income) 분배구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세·재정지출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복지지출과 관련된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나 경제규모에 걸맞게 복지지출을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저자, sung@kipf.re.kr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bpark@kipf.re.kr

논문투고일: 2008년 1월 1일, 심사완료일: 2008년 2월 14일

확대함으로써 양극화 또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의 기저에는 사회복지가 갈등과 대립에 따른 사회혼란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에너지가 경제성장에 집중되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성장기여론’이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성장저해론’도 있다. 사회복지지출이 비생산적이며, 이를 위한 조세 부담이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 밖에 복지와 성장이 전혀 관계가 없거나 서로 상쇄된다는 ‘성장중립론’도 있다. 현재까지의 실증분석 연구를 보면 양자 간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논쟁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사항은 소득분포 및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²⁾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소득분포가 개선되고 있다면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반면에 소득분배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면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만약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가장 재분배 효과가 높은 방식으로 재정지출 구조를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소득분포의 추이, 조세 및 재정지출 유형별로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여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가 다수 있다³⁾.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구조 추이의 분석보다는 조세 및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특화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간접세 및 현물급여의 재분배 효과를 포함시킴으로써 조세·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의 지평을 크게 확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론을 설명한다. III장은 전 가구가 포함된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간접세 및

2)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지수(지니계수)의 변화율을 소득재분배 효과로 정의하기로 한다.

3) 소득분배구조 추이에 대한 연구는 나성린·현진권(1993), 현진권·강석훈(1998), 성명재·이명현(2001), 박찬용·강석훈·김태완(2002) 등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가 매우 풍부하다. 나성린·현진권(1993)은 조세·사회부조모형을 이용하여 도시가계의 소득분배구조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밖에 현진권·강석훈(1998), 성명재·이명현(2001), 박찬용·강석훈·김태완(2002) 등은 소득분배구조 및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박찬용 외(2002)와 국회예산정책처(2004) 등에서는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율 추이 및 변화효과 등을 함께 분석하였다. 그 밖에도 유경준·김대일(2002), 현진권 외(2003) 등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연구가 있어 본문에 모두 소개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현물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본다. IV장은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증세를 통한 각종 재정지출의 확대가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에 대해 정책모의실험을 통해 논의한다. 즉, 특정한 세목의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에 소득계층별 부담과 수혜를 살펴본다. V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찾아본다.

II.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소득단계별 소득분포 및 각종 조세·재정의 분포 구조와 소득재분배 효과 고찰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로는 2006년도 통계청의 가계조사원시자료를 사용한다. 2006년 가계조사자료는 농어가 등 극히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전국단위의 모든 가구를 자료포괄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료의 대표성이 매우 높다. 이전 기간의 자료와 달리 2006년부터는 1인가구도 표본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표본이라는 한계도 극복하였다. 2006년도 가계조사자료의 인적특성과 소득 등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2006년도 가계조사자료의 기술통계

(단위: 천원)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가구주 연령(세)	48.8	13.5	95.0	15
가구원 수(명)	3.0	1.3	9.0	1
취업인 수(명)	1.3	0.9	5.0	0
시장소득	34,299	24,437	288,189	0
총소득	37,455	23,599	288,189	0
가처분소득	34,418	20,618	243,456	0
소비지출	22,865	14,111	131,461	1,091
근로·종합소득세	1,404	2,443	41,932	0
재산세	128	365	9,028	0
이전소득	3,156	6,760	95,346	0
사회보장기여금	1,482	1,475	12,040	0

주: 자료의 연간화, 계절성 및 선택편의 제거 후 5,127가구를 대상으로 분석

가계조사원시자료는 월별로 구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월별자료를 동일 가구별로 묶어 연간단위로 환산한 다음 각종 조세·재정지출의 부담·수혜를 추정하여 최종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간단위로 자료를 환산한 이유는 정부의 예산주기 및 소득세 등의 산출단위와 임금결정구조 등이 대부분 연간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이다. 자료의 연간화 방법에 대해서는 부록 I을 참조하기 바란다.

가구구성원은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면서 소비생활도 함께 하기 때문에 가구의 크기, 즉 가구원 수가 다를 경우 동일한 후생수준을 나타내 주는 소득수준도 달라진다. 이와 같이 가구원 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 수준의 후생을 나타내주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소득은 가구원 수에 대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동일 후생을 제공하는 소득수준의 증가율은 가구원 수의 증가율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납세자의 증가소득을 추정하기 위하여 동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를 사용한다. 동등화지수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동등화지수, 즉 가구원 수에 제곱근⁴⁾을 사용하여 소득을 나눠주는 방식을 택하였다⁵⁾.

2. 분석방법

가. 개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조세·재정의 분석범위는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담배소비세, 소비세분 교육세, 주행세)(이상 조세)와 공적연금과 기타사회보장수혜(이상 현금급여), 공적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 기타사회보험료(이상 사회보장기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그리고 교육·보험·주택 서비스(이상 현물급여)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세, 재산세,

4) Burniaux 외(1998) 참조

5)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조정을 하기 위하여 성인과 미성년자의 차이를 고려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조정된 소득은 $Y^* = Y/(A+aC)^b$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Y 는 가구 소득이며, A 는 성인 수, C 는 미성년자 수, a 는 미성년자 조정을 위한 계수, b 는 규모의 경제를 조정하는 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a 는 1, b 는 0.5를 사용한 것이 된다.

사회보험료, 현금급여에 대한 분포 추정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간접세도 포함한 경우도 간혹 있으나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분포 추정 및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부담의 대상 또는 지원대상을 선별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과세해야 하는 조세와 달리 성격상 재분배적 성격을 많이 띠는 상기의 현물급여(서비스)는 수혜대상을 선택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조세와 현금급여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동안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분석방법을 통해 서비스 분포를 추정함으로써 공공 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지평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조세 및 현금급여의 추정

조세 중 재산세와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현금급여의 경우에는 가계조사자료에 조사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득세의 경우에도 조사된 자료가 있지만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⁶⁾ 조사자료 대신 세부담을 추정(imputation)하여 사용하였다.

소득세 부담을 인별·소득종류별로 소득을 나누어 과세자별로 정리한 다음, 소득세법에 기초하여 인적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표준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표를 산출하고 세율구간별로 세율 적용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후에 산출된 세액을 소득세 추정치로 사용하였다. 가구의 세부담은 인별 세부담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부양가족공제 등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함으로써 현실에 최대한 가깝게 소득세 부담을 추정하였다.

간접세의 경우에는 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소비항목별 과세대상을 구분

6) 소득세의 경우 조사자들이 세부담을 기억하지 못하여 실제와 달리 보고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금년에 납부하는 세금은 대부분 전년도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과 소득세 부담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 성명재(2005)의 연구결과를 빌어 추정해보면 금년도 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전년도 소득의 95% 신뢰구간이 1,510~5,960만원일 정도로 소득변동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고된 소득세와 당해연도 소득 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소득세의 경우에는 조사자료보다 세법에 기초하여 추정한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하고 각 소비세 세목별 과세대상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⁷⁾와 유통마진(마진을 25% 가정)을 역추정하였다. 그리고 지출액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유통마진을 차감하면 개별소비세의 과표와 개별소비세액의 합이 도출되므로 이로부터 법정세율을 역산하는 방법으로 개별소비세액을 추정하였다.

다. 현물급여의 추정

현물급여는 소득자들이 현금의 형태로 수혜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만큼 가계조사자료와 같은 서베이자료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물급여의 경우에도 일정한 방법과 규칙을 기초하여 분포를 추정하여 소득자별로 배분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현물급여에 대한 추정방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추정방식과 분석결과를 간략히 소개한다.

조세 및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연구 방법은 크게 개인의 선호(individual preference)를 측정하는 방식과 혜택의 귀착(benefit incidence)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의 선호를 이용하는 방식은 Aaron and McGuire(1970)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는 미시적 경제이론을 이용하여 추정된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의 편익을 분석하는 것으로 ‘행위접근법(behavioral approach)’이라고도 한다. 기본적인 방법론은 Ravallion 외(1995)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부이전지출로 인한 소비 증가를 재정지출로 인한 혜택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성향을 계산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여야 하는 복잡성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편익접근법(benefit approach)’이 있다. 재정지출의 편익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실제 정부가 공급한 정부재화 및 서비스의 지출액을 바탕으로 편익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다. 조세의 경우에는

7)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공공기관 등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최종 소비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일반가계의 소비지출자료로부터 추정된 부가가치세는 법인이나 공공기관 등 개인 이외의 단체 등이 부담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중국적으로는 개인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비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분비율은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추정한 부가가치세 부담액과 비례한다고 하였다. 2006년 현재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38.1조원이고 통계청의 총추계가구 수가 약 1,616만가구이므로 가구당 평균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239.6만원에 해당된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추정하였다.

부담한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Meerman(1979), Selowsky(1979), Demery(2000) 등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변화에 대한 개인 혹은 가구별 행동적인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Devarajan and Hossain(1998)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하여 필리핀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교육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Hewitt(1987)는 개인의 소비와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재정지출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구분하여 재정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현물급여의 형태로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지를 구별하였다. Hewitt(1987)는 재정지출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요에 대한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재정지출 효과를 살펴보았다.

재정지출의 혜택을 살펴보는 국내 연구로는 심상달(1988)의 연구가 있다. 심상달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공공재 생산이 소득분배에 주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조경엽(2007)은 심상달(1998), 박기백 외(2004)와 마찬가지로 '순수공공재'는 '행위접근법'을 사용하고, '비순수공공재'는 '편익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을 사용하여 재정지출이 변화하는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2차적인 소득분배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조경엽(2007)에 따르면 주택건설, 교육 및 SOC, 이전소득, 연구개발 순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이 어렵고, 추정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행위접근법' 대신에 '편익접근법'을 사용하여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가계의 각종 부담 및 수혜의 소득효과를 계산한다.

현물급여의 추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현물급여의 경우 규모가 미미한 해산장제급여, 현금급여인 자활급여 등은 제외하고 의료 및 교육급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은 소득인정액의 85% 수준인 점을 이용하여 시장소득 및 민간이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85%보다 작은 가구인 경우에 국한하여 1인당 평균 의료급여 비용을 배분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의료서비스 이외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급

여)에 국한하였다. 건강보험급여 또는 의료서비스의 혜택은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성별·연령별 평균급여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다만 의료비 지출 규모가 클수록 의료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가구의 의료비 지출 총액에서 해당 가구의 의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정부의 교육서비스의 경우 초·중등교육은 자립형 사립학교 등 소수의 학교를 제외하면 편차가 거의 없으므로 혜택은 1인당 교육비를 이용하였다. 다만 대학 등 고등교육 과정은 학비와 교육서비스가 전문학교, 대학교, 대학원 및 학교별로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하여 1인당 교육비를 사용하지 않고, 국·공립대학에 다니는 경우만 국·공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였다.

영유아 보육은 기관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였다⁸⁾. 국·공립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민간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은 기관에 대한 지원이므로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지원액을 사용하였다.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보육료는 소득 및 취원 여부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 형태가 다양하지만 핵심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용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구입자금은 소득계층별 이용률을 사용하였다. 국민임대주택자금은 전세자를 제외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혜의 경우처럼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배분되는 것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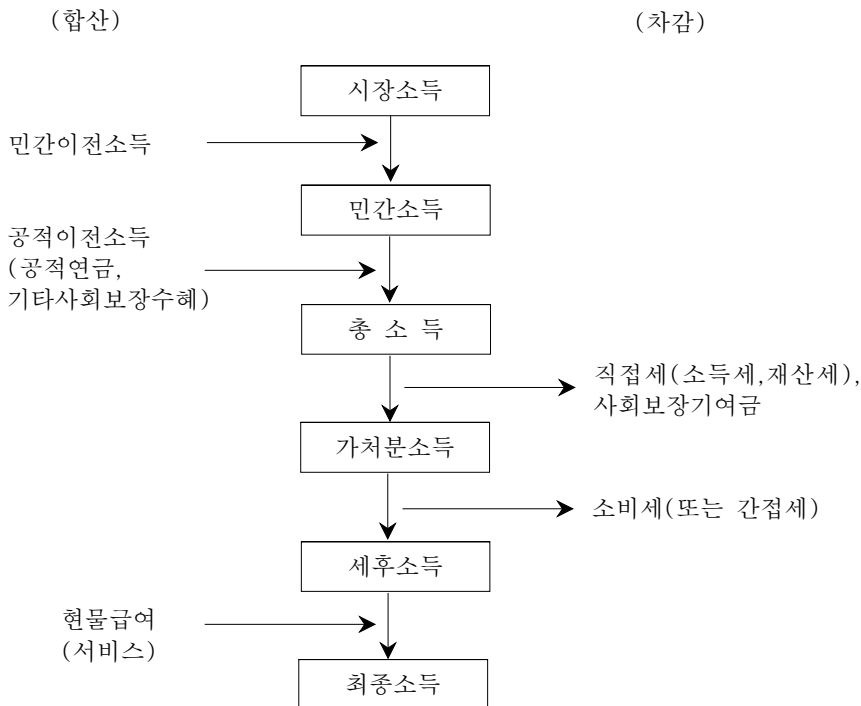
3. 소득의 종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시장소득(market income, 또는 본원소득(original income))은 노동과 자본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민간소득(private income)은 시장소득에 타 가구 등으로부터 경상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 교육비 등 민간이전소득을 추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개입에 의한 효과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시장소득에 민간이전소득을 합산한 민간소득을 기준으로 조세 및 재정지출의 재분배 효과를 고찰한다. 시장소득과 민간

8) 서문희 외(2006) 자료 참조

소득은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시장소득에 민간·공적 현금급여(cash benefits)를 합산하면 총소득(gross income)이 된다. 여기에는 4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장애인수당 등이 포함된다. 총소득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차감하면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을 얻게 된다. 사회보험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은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은 통계청 가계조사자료상의 소득금액에 세법상의 세율 및 공제 등을 감안하여 세액을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세(간접세)를 차감한 소득을 세후소득(post-tax income)으로 정의한다.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육세(각종 소비세에 대한 surtax분)를 포괄한다. 세후소득에 현물급여(in-kind benefits)를 추가하여 최종소득(final income)을 정의한다. 현물급여의 유형은 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건강보험, 교육, 보육, 주택으로 한정하였다.

[그림 1] 단계별 소득의 종류



Ⅲ. 부담·수혜분포 및 소득재분배 효과

1. 부담 및 수혜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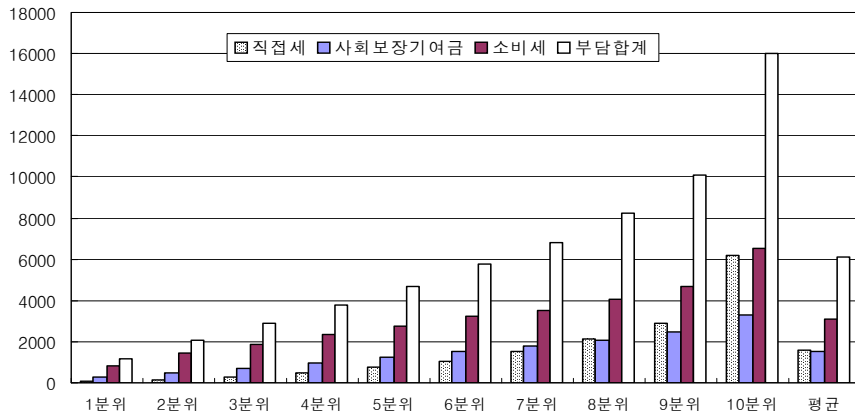
2006년 현재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의 가구당 부담 평균은 614.7만원이고 재정지출 수혜(현금·현물급여)는 612.2만원으로 후자가 전자보다 2.5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규모면에서 양자가 거의 일치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소득계층별로는 최저소득층인 1분위가 가구당 평균 116.7만원을 부담하지만 414.5만원을 수혜하여 순수혜가 297.8만원에 이른다. 반면에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600.7만원을 부담하고 843.0만원을 수혜하여 757.7만원을 순부담한다(<부표 1>참조).

먼저 소득계층별 부담구조를 살펴보자. 가계부담이 큰 항목은 부가가치세(약 240만원), 소득세(약 143만원), 공적연금기여금(약 82만원) 등의 순으로 추정되었다. 세부담의 고소득 집중도(최상위 10%/최하위 10%)를 알아보기 위해 최상·최하 10%의 세부담 상대비를 구해보았다. 그 결과 소득세(241.8), 기타사회보장기여금(25.3), 공적연금기여금(22.9), 교통세(14.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담배소비세(2.0), 주세(3.0), 특별소비세(5.8)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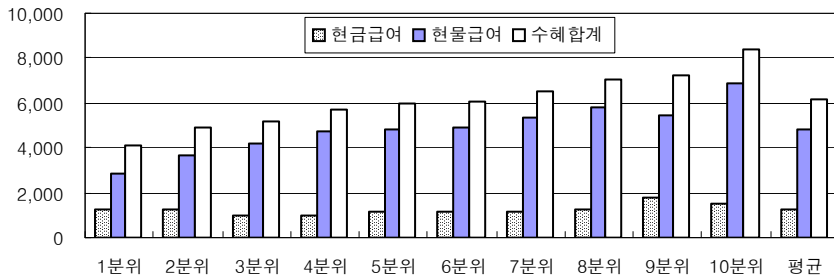
[그림 2] 부담의 소득계층별 분포(2006년)

(단위 : 천원)



재정지출(현금·현물급여)을 통한 수혜액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커지지만 수혜증가율은 소득증가율에 못 미치기 때문에 수혜분포가 소득에 대해 역진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면 1분위의 수혜액이 414.5만원이고 10분위는 843.0만원으로 나타나 10분위와 1분위 간의 수혜상대비가 2.0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 사회지출수혜의 규모가 큰 항목은 건강보험(251.8만원), 교육(222.8만원), 공적연금(72.4만원) 등의 순이었다.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항목은 기초생활 의료급여, 주택, 기타사회보장수혜 등의 순이다. 반면 고소득층의 수혜규모가 큰 항목은 건강보험, 기타사회보장수혜, 공적연금 등이다. 수혜금액의 소득계층별 차이가 작은 이유는 소득이 아닌 가구원 수(유아, 학생, 노인 등)에 비례하는 지출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소득층일수록 평균수혜액의 절대금액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은 공적연금 등의 항목에서 구간별로 수혜구조가 누진성을 나타내는 항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고소득층일수록 평균적으로 가구원 수가 많아진다는 데에도 일부 요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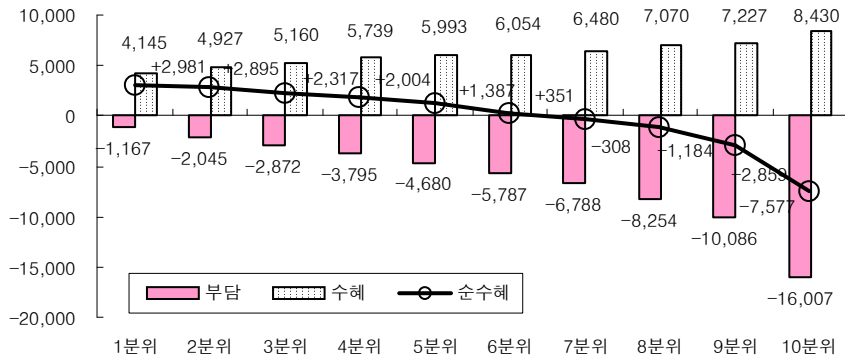
[그림 3] 국민혜택의 소득계층별 분포(2006년)
(단위 : 천원)



공적부문에 의한 부담·수혜를 기준으로 수혜에서 부담을 차감한 소득계층별 순혜택을 보면 하위 60%(1~6분위)는 순혜택을 보는 한편 8~10분위는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밖에 7분위의 경우에는 가구당 순부담이 30.8만원으로 부담과 수혜가 거의 일치한다. 이는 7분위의 경우 순수혜가구와 순손실가구가 혼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부담의 소득계층별 편차는 상당히 크지만 수혜는 소득계층별로 편차가 작다. 이는 사회지출 수혜구조가 소득보다는 가구원 수 또는 가구주의 연령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⁹⁾.

[그림 4] 부담 및 수혜의 소득계층별 분포(2006년)
(단위 : 천원)



2. 부담·수혜의 누진구조

부담의 경우 소득계층별 분포구조가 역진적이면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수혜의 경우에는 분포구조가 역진적이면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정반대로 분포구조가 누진적인 경우에는 각각 위와 반대의 효과를 나타낸다.

부담·수혜의 누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균실효부담률(또는 평균실효수혜율) 대비 소득계층별 부담률(또는 수혜율)의 상대비율을 추정해보았다(<부표 4> 참조).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려보면, 소득계층별 상대비곡선이 1을 사이에 두고 우상향(또는 우하향)하는 경우에는 부담·수혜의 분포구조가 누진적(역진적)임을 시사한다. 만약 상대비곡선이 수평이면 부담·수혜구조가 소득에 대해 비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세는 누진적, 이전소득과 현물급여, 주세, 담배소비세는 역진적,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은 대체로 비례적인 부담·수혜구조를 가졌다. <그림 5>에서는 부담·수혜항목 가운데 소득세와 교육급여 등 다섯 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부담률의 상대비곡선을 그려보았다.

소득세는 부담률의 상대비곡선이 우상향하는 대표적인 부담항목이다. 이

9) 그러나 법인세·양도소득세처럼 자료 제약으로 인해 부담의 대상을 알기 어렵거나 통일·외교 등 지출의 혜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제 계층별 순혜택을 의미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와 반대로 담배소비세와 교육급여(서비스)는 우하향하는 상대비곡선을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미약하나마 상대비곡선이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지만 1 부근에서 거의 수평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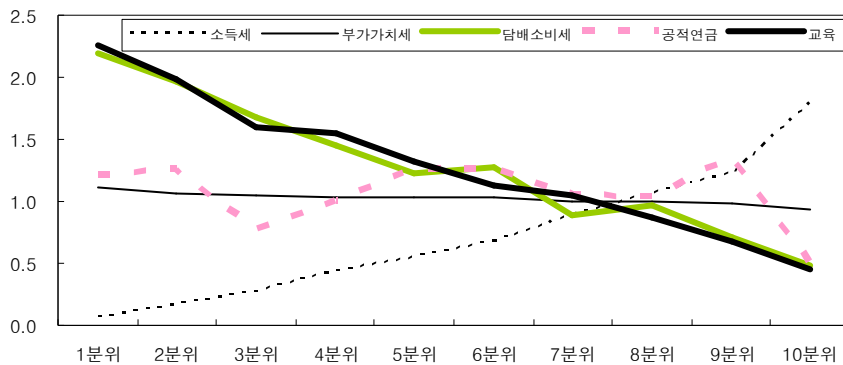
한편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수혜율의 상대비곡선이 1을 중심으로 파동치면서 들쭉날쭉하다. 이상의 다섯 가지 부담·수혜의 상대비곡선을 살펴본 결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담률·수혜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부담항목 중 소득세는 단일항목으로 평균부담이 두 번째로 큰데 부담구조도 매우 누진적이다. 이는 소득세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수혜구조가 역진적인 만큼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아울러 교육급여도 가구당 평균 222.8만원에 이르는 등 수혜총액의 1/3을 넘는 만큼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부담구조가 매우 역진적이다. 따라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만 부담액이 5.7만원에 불과하여 절대효과는 작을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는 부담구조가 역진적이고 가구당 평균부담도 239.6만원으로 매우 크지만 질적 측면에서 본다면 중립적(또는 소득비례적)인 세부담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아도 무리하지 않은 만큼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비례적, 역진적, 누진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작을 것이다.

나머지 부담·수혜항목에 대해서는 <부표 4>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5] 소득분위별 평균실효세율 또는 평균실효수혜율 대비 부담·수혜 상대비(2006년)
(단위: 배)



3.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계수 개선도¹⁰⁾

분배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니계수 개선도, 즉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살펴본다. 이런 방법을 이용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추정·비교는 일본을 비롯하여 OECD 국가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¹¹⁾.

2006년 현재 민간소득 지니(0.31608)를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의한 최종소득 지니(0.27298)의 변화율(감소율)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13.6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성항목별로는 현물급여, 소득세, 기타사회보장수혜가 각각 7.02%p, 3.52%p, 2.26%p로 소득재분배 효과의 12.80%p로 거의 대부분(93.8%)을 차지한다. 그 밖에 공적연금과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직접세(재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에는 미미한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소비세의 경우에는 부담구조가 완만하게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지니계수를 민간소득 지니 대비 0.37% 상승시켜 負(-)의 소득재분배 효과(-0.37%p)를 나타내었다. 개별 항목별로는 교육급여가 4.08%p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¹²⁾. 상대소득분포의 측면에서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있어서는 현금급여나 조세보다는 현물급여에 의한 효과가 압도적으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가족이나 친지 간 생계비 보조 등의 주축이 된 민간이전소득에 의해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민간소득 대비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할 때 민간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4.06%p(0.32890 → 0.3160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시장소득단계에서 최종소득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합산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총 17.69%(0.31608→0.27298)에 이르며 이 가운데 공공부문에 의한 효과가 13.64%p, 비중으로는 전체의 77.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정지출을 통한 현물급여의 효과가 훨씬 더 큰 것

10) 지니 개선도(%) = $100 \times (\text{민간소득 지니} - \text{특정소득 지니}) / \text{민간소득 지니}$

11) 지니계수 대신 Atkinson지수, 자승변이계수(SCV), 평균대수편차(MLD) 등의 불평등도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더라도 수치상 약간씩의 차이만 있을 뿐 질적 측면에서의 차이는 별로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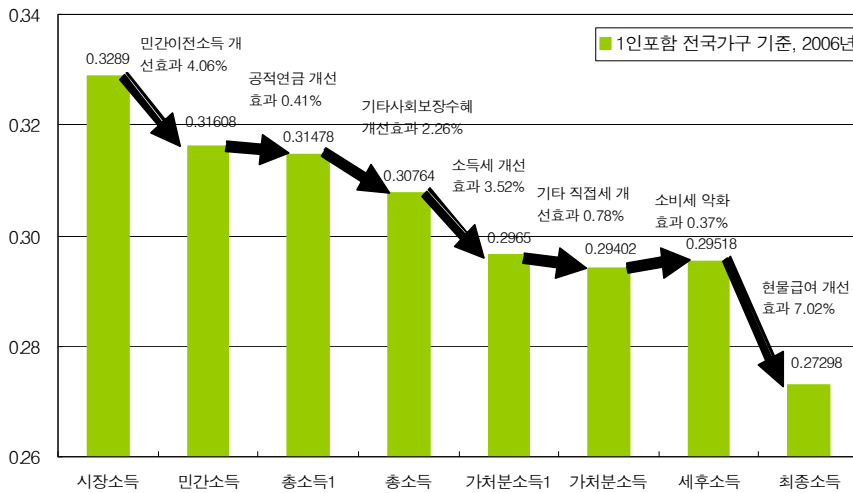
12) 교육급여는 소득계층별 지출규모가 대체로 균등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에서도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는 차별과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지원이 불필요한 대상까지 혜택이 돌아가지만 재정지출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비용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모두 우월하기 때문이다.

2006년 기준으로는 공적연금이나 기타사회보장수혜(기초생보 등) 등 현금급여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소득세보다 작지만 향후에 국민연금 등 복지수혜 범위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효과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소비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약화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사실상 0에 가깝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주요 소비세의 세부담이 소득에 거의 비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세와 담배세의 경우에는 세부담의 역진성이 상당히 큰 편이지만 세수비중이 작기 때문에 負(-)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작은 편이다.

[그림 6] 주요 소득단계별 지니계수 및 소득재분배 효과



주: 총소득1 = 민간소득 + 공적연금
 가처분소득1 = 총소득 - 소득세
 소득재분배 효과는 민간소득 지니를 분모로 하여 단계별로 측정한 지니계수 변화율로 계산

4. 국제비교: 소득세와 공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선진복지국가의 경우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시장소득(또는 민간소득)에서 최종소득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장소득 단계에서 가치분소득 단계에 이르는 수준에서 소득단계별 지니계수를 발표함으로써 현물급여와 직접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정도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¹³⁾.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이전소득과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민간소득 지니계수 대비 지니 변화율)는 2006년 현재 6.98%이다.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의 경우에는 각각 15.2%(2005년), 34.6%(2005/06회계연도), 25.3%(2005년), 18.6%(2004년), 26.0%(200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또는 직접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공적연금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현금급여)를 통한 재정지출(공적이전소득)의 효과보다 크지만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우리와 정반대로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크다. 우리나라의 직접세를 통한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4.31%로 캐나다의 8.9%보다는 현저히 낮지만 미국 5.9%, 영국 5.8%, 뉴질랜드 4.7%와 비교해볼 때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일본(2.5%)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한 차이를 두고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우리나라가 2.67%에 불과하지만 상기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9~29% 정도로 우리보다 크게 높다. 다만 선진복지국가 내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편차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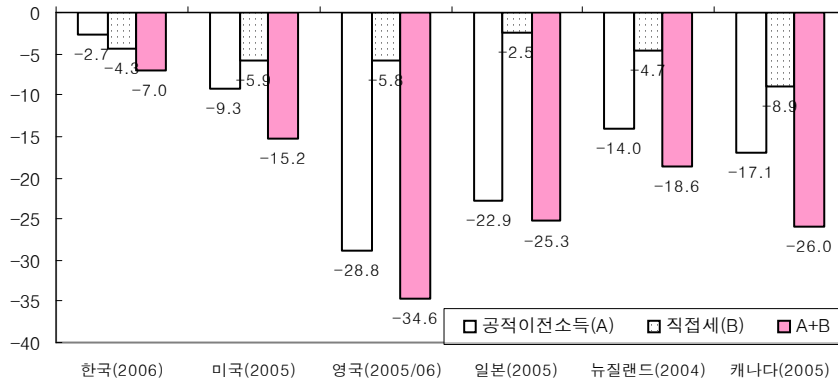
공적이전소득과 관련하여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현격한 차이로 작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복지제도의 범위가 선진국보다 좁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령화의 진전속도 차이, 노인인구비의 차이,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에 의한 소득수준의 차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복지재정지출이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복지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현행의 제도 하에서도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복지지출의 자연증가

13) 다만 국가별로 경제발전단계, 복지제도, 조세체계, 인구구조 등의 제반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 수치비교를 통한 비교는 해석상 오류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분만으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변화율)의 국제비교

(단위: %)



<표 2>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기준연도	기준연도	지니계수(기준소득)				소득재분배 효과(%)		
		시장소득(A)	총소득(B)	가치분소득		사회이전소득(B-A)/A	소득세기여금(C-B)/A	계(C-A)/A
				소득세후	소득세기여금(C)			
한국	2006	0.31608	0.30764	0.29650	0.29402	-2.67%	-4.31%	-6.98%
미국	2005	0.493	0.447	-	0.418	-9.3%	-5.9%	-15.2%
영국	2005/06	0.52	0.37	-	0.34	-28.8%	-5.8%	-34.6%
일본	2005	0.5263	0.4059	-	0.3930	-22.9%	-2.5%	-25.3%
뉴질랜드	2004	0.43	0.37	-	0.35	-14.0%	-4.7%	-18.6%
캐나다	2005	0.439	0.364	0.325	-	-17.1%	-8.9%	-26.0%

- 주: 1.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근로종합이자배당소득세를 나타냄. 시장소득은 민간소득(=시장소득+민간이전소득) 기준임.
 2. 일본의 총소득 기준은 사회보장에 따른 재분배후 소득을 말함. 다른 나라와 달리 시장소득에 사회이전소득을 합산한 다음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것임. 따라서 일본의 경우 가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사실상 조세만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보아야 함.
 3. 뉴질랜드의 경우 소득세기여금 후 소득은 간접세까지 차감한 것임.

자료: 미국 - US Census Bureau(2007)
 영국 - Jones(2007)
 일본 - 후생노동성(2007)
 뉴질랜드 - Treasury(2005)
 캐나다 - Statistics Canada(2007).

IV. 증세·복지지출 증대 조합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1. 시나리오

앞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계의(직·간접적인) 부담과 수혜가 모두 포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순수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본 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Ⅲ장에서 분석한 부담·수혜항목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한 소득계층별 부담·수혜구조의 변화효과를 분석한다¹⁴⁾.

부담의 변화 측면에서는 주요한 증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교통세 및 건강보험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¹⁵⁾. 지출 대상은 분석이 가능한 기초생활보장, 교육, 영유아 보육, 주택 및 건강보험 수혜로 한정하였다. 개별 항목별 증세 또는 지출증대 규모는 각각 1조원에 이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소득세를 증세하는 방안은 세율을 인상하거나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법, 세율구간을 조정하는 방법 및 각각을 적절히 조합하는 방법 등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증세방안으로서 세율을 비례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세율을 8%, 17%, 26%, 35%에서 8.33%, 17.70%, 27.07%, 36.44%로 4.1/100씩 인상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부가가치세도 세율인상 또는 면세범위 축소의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면세범위의 조정은 대상 선정 및 규모 산정이 복잡하므로 세율조정 방안을 선택하였다. 즉,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0.25%p 인상(10%→10.25%)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담배소비세는 종량세이므로 1갑당 220원의 담배세를 증세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조원 증세를 위해서는 교통세의 경우 7.4%의 세율인상이 필요하다. 2006년 말 현재 휘발유와 경유 교통세의 세율이 각각 리터당 526원과 351원이므로 566원과 378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연간 16조 9,277억원(2005년 기준)이므로 보험료의 1조원 증수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에서 각각 5.9%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4) 부담 중에서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수혜 중에서는 국방, 치안, 일반공공행정서비스 등이 제외되어 있다.

15) 연금도 중요한 증세 대상이지만 그 혜택은 연금에 귀속될 것이고,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존재하므로 제외하였다.

수혜 부분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부 지원은 현금급여와 의료급여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금급여와 의료급여에 각각 5천억원씩 추가로 지출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건강보험급여의 경우도 1조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2006년의 경우 전체 급여비가 28.4조원이므로, 1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계산하였다. 교육 분야는 대학 등 고등교육은 교육비 총액을 알기 어려우므로 초·중등교육에만 추가적인 지출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학생 수를 감안하여 초등학교에 5천억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2,500억원씩 배분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배분된 액수를 학생 수로 나누면 1인당 추가적인 지원이 된다. 보육도 1조원을 지출하되 공급자 및 수요자 지원이 각각 5천억원씩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수요자 지원의 경우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가구)과 차상위계층은 2006년 현재 100%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지원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가구 수 비율(전체 가구 수 대비 3~4분위의 대상가구)을 이용하여 표본 가구의 1인당 지원액을 계산하였다. 주택의 경우는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임대주택건설자금과 국민주택건설자금에 각각 2천 5백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분양주택의 경우는 사실상 정부지원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2. 추정 결과¹⁶⁾

추정 결과를 보면 누진도가 높은 세입 항목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혜택의 저소득층 집중도가 높은 지출에 사용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세 재원을 교육에 사용하는 경우 순혜택 대상이 많아지는 반면 기초생활보장이나 보육에 사용하면 순부담 대상이 증가한다¹⁷⁾.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를 재원으로 조달하여 교육지출을 확대하면 소득 7분위까지 이득을 보는 반면 고소득층은 순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

16) 정책의 변화는 노동공급, 저축, 소비 등의 변화를 동반하는 등 효율성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절에서 모의실험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와 같은 효과는 분석하지 않았다. 다만 복지지출 증대 및 이를 위한 증세는 일반적으로 효율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7) 자세한 내역은 <부표 5> 참조

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사용하면 소득 5분위부터 순부담이 발생한다. 만약 기초생활보장에 사용하면 소득 1분위는 순혜택 규모가 대규모로 발생하지만 소득 2분위부터 순부담이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로 재원을 조달하여 교육 지출을 확대하면 소득 7분위까지 이득을 보는 반면 소득 8분위부터는 순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영유아나 주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 5분위부터 순부담이 발생한다. 세부담 구조가 역진적인 담배소비세를 추가 징수하여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고소득층의 혜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각 1조원씩 총 5조원의 증세·세출증대 방안을 종합하면 순수혜 계층은 하위 40%(1~4분위)이고, 순부담 계층은 상위 60%(5~10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는 혜택과 수혜가 각각 99만 3천원과 10만원으로 89만원 3천원의 순수혜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수혜 규모는 감소한다. 10분위의 경우에는 부담이 67만원 8천원, 혜택이 19만 2천원으로 순부담이 48만 6천원이다. 이는 저소득 집중도가 높은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포함)이 포함되기 때문에 순혜택을 보는 소득 계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증세 및 지출 증대의 구성은 정책적·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이때 고려되는 대표적인 요소가 경제상황, 성장, 분배, 집권당의 이념 등이다. 예를 들어, 성장에 초점을 두는 정부는 소득세 증대를 통한 분배의 개선이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득과세의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에 소극적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사는 성장이나 이념이 아닌 증세 및 지출 증대의 구성에 따라 순수혜(수혜 - 부담) 계층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순수혜 규모 이외에 순수혜를 받는 계층의 범위는 정치경제학적인 함의도 있다. 정책의 결정이 투표 또는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수혜 계층의 범위가 넓은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순수혜 계층의 범위가 넓어지면 저소득층에 대한 순수혜의 크기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재분배 효과는 작아진다. 저소득층에 순수혜가 집중된 정책조합의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 해당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채택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¹⁸⁾.

18) 절대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의 경우 이타심에 의해 여론이 호의적일 수도 있다. 또한 경제인 간의 정치적 영향력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순수혜 계층이 작을수록 투표에서 지거나 여론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성장률 둔화, 세계화·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순수혜가 집중되는 방향으로 조세 및 지출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순수혜 계층이 소수에 불과하다면 비록 그것이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하더라도 정치경제학적으로는 수용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조세 및 지출 구조 개편시에는 경제적 상황이나 집권당의 이념, 소득재분배 효과 이외에 순수혜 계층의 범위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 국민부담 및 사회지출 1조원씩 증가시 소득계층별 순수혜 계층의 범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세 ⇒ 교육										
소득세 ⇒ 보육										
소득세 ⇒ 건보										
소득세 ⇒ 기초생보										
부가세 ⇒ 교육										
부가세 ⇒ 보육										
부가세 ⇒ 주택										
교통세 ⇒ 교육										
교통세 ⇒ 주택										
담배세 ⇒ 교육										
담배세 ⇒ 건보										
건보 ⇒ 교육										
건보 ⇒ 건보										

주: 음영처리한 부분은 순수혜를 의미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구조 악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대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의 조세·재정지출이 국민부담·수혜구조에 미치는 영향(소득재분배 효과)을 분석해보고, 가상적으로 증세를 통한 복지지출 증대시 예상되는 분배효과 및 정치경제학적 시사점을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2006년 현재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민간소득 지니 대비 지니 감소율이 13.6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민간이전소

득에 의한 효과(4.06%p)를 합산하면 시장소득에서 최종소득에 이르기까지 소득재분배의 총효과는 17.69%(0.32890→0.27298)에 이른다.

부담 항목 가운데 소득세가 누진도가 높으며 부담규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3.38%p라는 비교적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었다. 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세부담 구조가 역진적이고 따라서 負(-)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에 의한 재분배 효과는 -0.38%p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이는, 비록 주세와 담배소비세의 역진성이 크기는 하지만, 소득소비세 부담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의 부담구조가 소득비례적인 모습에 가깝기 때문이다. 수혜항목은 모두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현물급여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7.02%p로 매우 크다. 단일항목으로는 교육급여가 4.08%p로 가장 효과가 크다. 저소득층의 수혜집중도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가 가장 높고, 따라서 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 또한 가장 크지만 수혜규모가 교육급여의 1/100에 불과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작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선진복지국가에 비해서는 조세·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지만 향후에는 고령화 진전 및 복지지출 증대에 따라 선진복지국가와의 차이가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의실험 결과, 복지지출 증대와 증세 조합을 통한 재분배 효과의 순수혜 계층 범위를 분석해본 결과, 소득세 증세 또는 교육급여 지출 증대 조합을 선택한 경우에는 순수혜 계층의 범위가 대체로 하위 60~70%에 이르러 과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역진성이 높은 담배세의 증세 또는 수혜계층이 최저소득층에 집중된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등을 선택할 경우에는 순수혜 계층의 범위가 반수 이하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증세방안으로 역진성이 매우 높은 담배소비세나 주세 등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증세·복지지출 증대 조합은 대체로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순수혜의 저소득층 집중도가 높을수록 그 효과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순수혜 계층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정치경제학적으로는 그런 정책이 정치과정을 통해 선택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동일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정책이 먼저 선택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희석하여 순수혜 계

층이 넓을수록 보다 유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세·재정지출의 1차효과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현금·현물급여 및 각종 조세부담의 변화에 따른 근로의욕 및 저축·소비의 변화 등과 같은 2차효과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있다. 아울러 각종 조세·재정지출의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 등과 같은 장기분석도 제외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분배 및 재분배 효과의 추정결과는 2차효과까지 포함한 경우와 차이를 보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 NABO 2004~2008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분석□ , 2004.
11.
- 나성린·현진권, 「한국의 조세·사회부조모형 2: 모집단화 적용을 통한 조세-사회부조의 소득분배 효과」, □ 재정논집□ , 제7집,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1993.
- 박기백·김진·전병목, □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박찬용·강석훈·김태완, □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 연구보고서 2002-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서문화·나정·최혜선, □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분담방안 연구□ ,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 성명재, □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 연구보고서 05-01, 한국조세연구원, 2005.
- 성명재·이명현, □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지니계수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심상달, 「정부지출의 수혜분포분석」, □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KDI, 1988.
- 유경준·김대일,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와 재분배정책 효과 분석□ , 연구보고서 2002-08,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조경엽, □ 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 연산가능 일반균형을 이용한 분석□ , 한국경제연구원, 2007.

- 현진권,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 한국경제의 분석□ , 제5권 제1호,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금융연구원, 1999.
- 현진권·박기백·유경준·고영선, □ 소득분배와 정부지출□ ,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3. 7.
- Aaron, Henry and Martin McGuire, “Reply to Geoffrey Brennan,” “The Distributional Implications of Public Goods”, *Econometrica*, vol. 44, pp. 401~404, 1976.
- _____, “Public Goods and Income Distribution,” *Econometrica*, vol. 38, pp. 907~920, 1970.
- Burniaux, Jean-Marc, Thai-Thanh Dang, Douglas Fore, Michael Forster, Marco Mira d'Ercole and Howard Oxley(1998),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89*, ECO/WKP(98)2, OECD, 1998.
- Demery Lionel, “Benefit incidence: a practitioner's guide,” Poverty and Social Development Group Africa Region, The World Bank, 2000.
- Devarajan Shantayanan and Shaikh I. Hossain, “The Combined Incidence of Taxes and Public Expenditures in the Philippines,” *World Development*, Vol. 26, No. 6, pp. 963~77, 1998.
- Hewitt, D. P., “The Benefit Incidence of Consumption Public Goods,” *Public Finance Quarterly* 15, pp. 138~65, 1987.
- Jones, Francis,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4/05,” *Economic Trends*, 630, pp. 53-98,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6.
- Meerman, J. “Public Spending in Malaysia: Who Benefits and Wh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9.
- Mello, Luiz de and Erwin R. Tiongson,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ve Government Spending,” IMF WP/03/04, 2003.
- New Zealand Treasury, Income Growth and Earnings Variations in New Zealand, 1998-2004, by Dean Hyslop

and Suresh Yahanpath, 2005.

Ravallion Martin, Dominique van de Walle and Madhur Gautam, "Testing a Social Safety Ne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7, pp. 175~99, 1995.

Selowsky, M. "Who Benefits from Government Expenditures? A Case Study of Colombia",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9.

Statistics Canada, Income in Canada 2005, 2007.

U.S Census Bureau, "The Effect of Taxes and Transfers on Income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05," 2007.

<부록 I> 연간소득의 추정

월별자료의 연간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동일 가구에 대한 모든 월별자료를 토대로 월간 평균치를 구한 다음 12를 곱해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일치성(consistency)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분포의 pattern이 일정해야 한다는 계절성에 대한 전제조건이 따른다. 만약 계절성이 없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상기의 방법으로는 월별자료 연간화의 방법으로 적절치 못하게 된다.

Sung(2002)의 연구에서는 Q지수를 이용하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대상으로 계절성의 존재여부를 검정해 본 결과 계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그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각 분기별 Q지수가 -0.00184 , 0.00621 , -0.00639 , 0.0178 로 나타나 1분기와 4분기 자료가 95%의 신뢰구간(-0.01107 , 0.01652)에서 벗어남으로써 계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계절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방법으로는 일치성을 지닌 연간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Sung(2002)은 분기별로 월별자료가 1개 이상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기 내에서 '월간 평균치 $\times 3$ '의 방식으로 분기자료를 추정하고, 4개의 분기자료를 합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간자료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그 방법을 원용하여 연간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소 1개 분기 이상의 자료가 탈락하여 연간화 과정에서 제외된 표본이 무작위성을 띠지 않아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하는데, 이는 Sung(2002)과 마찬가지로의 결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ung(2002)은 최린추정법(nearest neighbor estimation)을 통해 표본에서 제외되는 표본관측치의 표본가중치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다른 관측치에 이전시켜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본 연구도 그 방법을 원용하였다.

<부록 II> 소득종류별 소득분포 및 조세·재정분포 표

<부표 1> 국민부담·사회지출수혜의 소득계층별 금액 분포

(단위: 천원, 배)

	1분위 (1)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	평균	배율 (2/1)
시장소득	7,287	13,828	19,037	23,515	28,406	33,774	38,882	45,655	53,501	79,117	34,299	10.9
민간이전소득	1,657	1,709	1,717	1,992	1,633	1,497	1,489	1,960	2,168	3,135	1,896	1.9
민간소득(I)	8,944	15,537	20,754	25,507	30,039	35,271	40,371	47,615	55,669	82,252	36,195	9.2
직접세(A)	69	142	291	510	732	1,042	1,527	2,146	2,914	6,168	1,554	89.4
소득세	24	100	223	434	641	938	1,406	1,991	2,701	5,803	1,426	241.8
재산세	45	41	68	75	91	104	121	155	213	365	128	8.1
사회보장기여금(B)	265	489	717	979	1,226	1,507	1,761	2,088	2,479	3,314	1,482	12.5
공적연금기여금	84	218	318	505	676	846	997	1,205	1,418	1,927	819	22.9
건강보험료	177	258	376	438	508	608	703	808	966	1,286	613	7.3
기타사회보험료	4	13	23	36	42	53	62	75	95	101	50	25.3
간접세(C)	833	1,414	1,864	2,306	2,722	3,238	3,500	4,020	4,693	6,525	3,111	7.8
부가가치세	656	1,093	1,437	1,744	2,059	2,423	2,686	3,128	3,608	5,122	2,396	7.8
특별소비세	43	56	82	108	138	143	143	157	185	249	130	5.8
교통세	49	120	165	234	280	371	384	410	535	694	324	14.2
주행세	12	29	39	56	67	89	92	98	128	167	78	13.9
주세	12	16	19	22	24	23	26	28	27	36	23	3.0
담배소비세	31	48	55	58	58	71	56	72	62	62	57	2.0
교육세	30	52	67	84	96	118	113	127	148	195	103	6.5
부담소계 (II=A+B+C)	1,167	2,045	2,872	3,795	4,680	5,787	6,788	8,254	10,086	16,007	6,147	13.7
세후소득(I-II)	7,777	13,492	17,882	21,712	25,359	29,484	33,583	39,361	45,583	66,245	30,048	8.5
현금급여(D)	1,280	1,292	993	1,002	1,150	1,186	1,127	1,224	1,816	1,534	1,260	1.2
공적연금	217	392	321	513	754	889	842	976	1,511	825	724	3.8
기타사회보장수혜	1,063	900	672	489	396	298	285	248	305	710	537	0.7
현물급여(E)	2,865	3,635	4,167	4,737	4,843	4,868	5,353	5,846	5,411	6,896	4,862	2.4
의료급여	223	0	0	0	0	0	0	0	0	0	22	0.0
건강보험	1,260	1,577	2,045	2,208	2,285	2,338	2,692	3,219	2,993	4,565	2,518	3.6
교육	1,240	1,901	2,045	2,443	2,437	2,436	2,585	2,561	2,343	2,288	2,228	1.8
보육	112	135	56	78	114	90	73	64	75	43	84	0.4
주택	29	23	21	9	6	4	2	1	0	0	10	0.0
수혜소계 (III=D+E)	4,145	4,927	5,160	5,739	5,993	6,054	6,480	7,070	7,227	8,430	6,122	2.0
최종소득 (I-II+III)	11,922	18,419	23,042	27,451	31,352	35,538	40,063	46,431	52,810	74,675	36,170	6.3

<부표 2> 국민부담·사회지출수혜의 소득계층별 비중 분포

(단위: %, 배)

	1분위 (1)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	배율 (2/1)
시장소득	2.1	4.0	5.6	6.9	8.3	9.8	11.3	13.3	15.6	23.1	10.9
민간이전소득	8.7	9.0	9.1	10.5	8.6	7.9	7.9	10.3	11.4	16.5	1.9
민간소득(I)	2.5	4.3	5.7	7.0	8.3	9.7	11.2	13.2	15.4	22.7	9.2
직접세(A)	0.4	0.9	1.9	3.3	4.7	6.7	9.8	13.8	18.8	39.7	89.4
소득세	0.2	0.7	1.6	3.0	4.5	6.6	9.9	14.0	18.9	40.7	241.8
재산세	3.5	3.2	5.3	5.9	7.1	8.1	9.5	12.1	16.6	28.5	8.1
사회보장기여금(B)	1.8	3.3	4.8	6.6	8.3	10.2	11.9	14.1	16.7	22.4	12.5
공적연금기여금	1.0	2.7	3.9	6.2	8.3	10.3	12.2	14.7	17.3	23.5	22.9
건강보험료	2.9	4.2	6.1	7.1	8.3	9.9	11.5	13.2	15.8	21.0	7.3
기타사회보험료	0.8	2.6	4.6	7.2	8.4	10.6	12.4	15.0	19.0	20.2	25.3
간접세(C)	2.7	4.5	6.0	7.4	8.8	10.4	11.3	12.9	15.1	21.0	7.8
부가가치세	2.7	4.6	6.0	7.3	8.6	10.1	11.2	13.1	15.1	21.4	7.8
특별소비세	3.3	4.3	6.3	8.3	10.6	11.0	11.0	12.1	14.2	19.2	5.8
교통세	1.5	3.7	5.1	7.2	8.6	11.5	11.9	12.7	16.5	21.4	14.2
주행세	1.5	3.7	5.0	7.2	8.6	11.4	11.8	12.6	16.4	21.4	13.9
주세	5.2	7.0	8.3	9.6	10.4	10.0	11.3	12.2	11.7	15.7	3.0
담배소비세	5.4	8.4	9.6	10.2	10.2	12.5	9.8	12.6	10.9	10.9	2.0
교육세	2.9	5.0	6.5	8.2	9.3	11.5	11.0	12.3	14.4	18.9	6.5
부담소계 (II=A+B+C)	1.9	3.3	4.7	6.2	7.6	9.4	11.0	13.4	16.4	26.0	13.7
세후소득(I-II)	2.6	4.5	6.0	7.2	8.4	9.8	11.2	13.1	15.2	22.0	8.5
현금급여(D)	10.2	10.3	7.9	8.0	9.1	9.4	8.9	9.7	14.4	12.2	1.2
공적연금	3.0	5.4	4.4	7.1	10.4	12.3	11.6	13.5	20.9	11.4	3.8
기타사회보장수혜	19.8	16.8	12.5	9.1	7.4	5.5	5.3	4.6	5.7	13.2	0.7
현물급여(E)	5.9	7.5	8.6	9.7	10.0	10.0	11.0	12.0	11.1	14.2	2.4
의료급여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건강보험	5.0	6.3	8.1	8.8	9.1	9.3	10.7	12.8	11.9	18.1	3.6
교육	5.6	8.5	9.2	11.0	10.9	10.9	11.6	11.5	10.5	10.3	1.8
보육	13.4	16.1	6.6	9.3	13.6	10.7	8.7	7.7	8.9	5.1	0.4
주택	30.4	23.4	21.8	9.0	6.4	4.4	2.6	1.4	0.3	0.2	0.0
수혜소계 (III=D+E)	6.8	8.0	8.4	9.4	9.8	9.9	10.6	11.5	11.8	13.8	2.0
최종소득 (I-II+III)	3.3	5.1	6.4	7.6	8.7	9.8	11.1	12.8	14.6	20.6	6.3

<부표 3> 국민부담·사회지출수혜의 민간소득 대비 상대비율 분포

(단위: %, 배)

	1분위 (1)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	소계	배율 (2/1)
시장소득	81.5	89.0	91.7	92.2	94.6	95.8	96.3	95.9	96.1	96.2	94.8	1.2
민간이전소득	18.5	11.0	8.3	7.8	5.4	4.2	3.7	4.1	3.9	3.8	5.2	0.2
민간소득(I)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
직접세(A)	0.8	0.9	1.4	2.0	2.4	3.0	3.8	4.5	5.2	7.5	4.3	9.7
소득세	0.3	0.6	1.1	1.7	2.1	2.7	3.5	4.2	4.9	7.1	3.9	26.3
재산세	0.5	0.3	0.3	0.3	0.3	0.3	0.3	0.3	0.4	0.4	0.4	0.9
사회보장기여금(B)	3.0	3.1	3.5	3.8	4.1	4.3	4.4	4.4	4.5	4.0	4.1	1.4
공적연금기여금	0.9	1.4	1.5	2.0	2.3	2.4	2.5	2.5	2.5	2.3	2.3	2.5
건강보험료	2.0	1.7	1.8	1.7	1.7	1.7	1.7	1.7	1.7	1.6	1.7	0.8
기타사회보험료	0.0	0.1	0.1	0.1	0.1	0.2	0.2	0.2	0.2	0.1	0.1	2.7
간접세(C)	9.3	9.1	9.0	9.0	9.1	9.2	8.7	8.4	8.4	7.9	8.6	0.9
부가가치세	7.3	7.0	6.9	6.8	6.9	6.9	6.7	6.6	6.5	6.2	6.6	0.8
특별소비세	0.5	0.4	0.4	0.4	0.5	0.4	0.4	0.3	0.3	0.3	0.4	0.6
교통세	0.5	0.8	0.8	0.9	0.9	1.1	1.0	0.9	1.0	0.8	0.9	1.5
주행세	0.1	0.2	0.2	0.2	0.2	0.3	0.2	0.2	0.2	0.2	0.2	1.5
주세	0.1	0.1	0.1	0.1	0.1	0.1	0.1	0.1	0.0	0.0	0.1	0.3
담배소비세	0.3	0.3	0.3	0.2	0.2	0.2	0.1	0.2	0.1	0.1	0.2	0.2
교육세	0.3	0.3	0.3	0.3	0.3	0.3	0.3	0.3	0.3	0.2	0.3	0.7
부담소계 (II=A+B+C)	13.0	13.2	13.8	14.9	15.6	16.4	16.8	17.3	18.1	19.5	17.0	1.5
세후소득(I-II)	87.0	86.8	86.2	85.1	84.4	83.6	83.2	82.7	81.9	80.5	83.0	0.9
현금급여(D)	14.3	8.3	4.8	3.9	3.8	3.4	2.8	2.6	3.3	1.9	3.5	0.1
공적연금	2.4	2.5	1.5	2.0	2.5	2.5	2.1	2.0	2.7	1.0	2.0	0.4
기타사회보장수혜	11.9	5.8	3.2	1.9	1.3	0.8	0.7	0.5	0.5	0.9	1.5	0.1
현물급여(E)	32.0	23.4	20.1	18.6	16.1	13.8	13.3	12.3	9.7	8.4	13.4	0.3
의료급여	2.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건강보험	14.1	10.1	9.9	8.7	7.6	6.6	6.7	6.8	5.4	5.5	7.0	0.4
교육	13.9	12.2	9.9	9.6	8.1	6.9	6.4	5.4	4.2	2.8	6.2	0.2
보육	1.3	0.9	0.3	0.3	0.4	0.3	0.2	0.1	0.1	0.1	0.2	0.0
주택	0.3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수혜소계 (III=D+E)	46.3	31.7	24.9	22.5	19.9	17.2	16.1	14.8	13.0	10.2	16.9	0.2
최종소득 (I-II+III)	133.3	118.5	111.0	107.6	104.4	100.8	99.2	97.5	94.9	90.8	99.9	0.7

<부표 4> 전체평균을 대비 민간소득 대비 부담수혜·소득비중의 상대비(분위부담률/평균부담률)

(단위: 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민간이전소득	3.54	2.10	1.58	1.49	1.04	0.81	0.70	0.79	0.74	0.73
직접세(A)	0.18	0.21	0.33	0.47	0.57	0.69	0.88	1.05	1.22	1.75
소득세	0.07	0.16	0.27	0.43	0.54	0.68	0.88	1.06	1.23	1.79
재산세	1.42	0.75	0.93	0.83	0.86	0.83	0.85	0.92	1.08	1.25
사회보장기여금(B)	0.72	0.77	0.84	0.94	1.00	1.04	1.07	1.07	1.09	0.98
공적연금기여금	0.42	0.62	0.68	0.87	0.99	1.06	1.09	1.12	1.13	1.04
건강보험료	1.17	0.98	1.07	1.01	1.00	1.02	1.03	1.00	1.02	0.92
기타사회보험료	0.32	0.61	0.80	1.02	1.01	1.09	1.11	1.14	1.24	0.89
간접세(C)	1.08	1.06	1.04	1.05	1.05	1.07	1.01	0.98	0.98	0.92
부가가치세	1.11	1.06	1.05	1.03	1.04	1.04	1.01	0.99	0.98	0.94
특별소비세	1.34	1.00	1.10	1.18	1.28	1.13	0.99	0.92	0.93	0.84
교통세	0.61	0.86	0.89	1.02	1.04	1.18	1.06	0.96	1.07	0.94
주행세	0.62	0.87	0.87	1.02	1.04	1.17	1.06	0.96	1.07	0.94
주세	2.11	1.62	1.44	1.36	1.26	1.03	1.01	0.93	0.76	0.69
담배소비세	2.20	1.96	1.68	1.44	1.23	1.28	0.88	0.96	0.71	0.48
교육세	1.18	1.18	1.13	1.16	1.12	1.18	0.98	0.94	0.93	0.83
부담소계(A+B+C)	0.77	0.78	0.81	0.88	0.92	0.97	0.99	1.02	1.07	1.15
현물급여(D)	4.11	2.39	1.37	1.13	1.10	0.97	0.80	0.74	0.94	0.54
공적연금	1.21	1.26	0.77	1.01	1.25	1.26	1.04	1.02	1.36	0.50
기타사회보장수혜	8.01	3.90	2.18	1.29	0.89	0.57	0.48	0.35	0.37	0.58
현물급여(E)	2.38	1.74	1.49	1.38	1.20	1.03	0.99	0.91	0.72	0.62
의료급여	41.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건강보험	2.03	1.46	1.42	1.24	1.09	0.95	0.96	0.97	0.77	0.80
교육	2.25	1.99	1.60	1.56	1.32	1.12	1.04	0.87	0.68	0.45
보육	5.40	3.74	1.16	1.32	1.64	1.10	0.78	0.58	0.58	0.23
주택	11.74	5.36	3.66	1.28	0.72	0.41	0.18	0.08	0.00	0.00
수혜소계(D+E)	2.74	1.87	1.47	1.33	1.18	1.01	0.95	0.88	0.77	0.61
시장소득	0.86	0.94	0.97	0.97	1.00	1.01	1.02	1.01	1.01	1.02
민간소득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총소득	1.10	1.05	1.01	1.00	1.00	1.00	0.99	0.99	1.00	0.98
가처분소득	1.16	1.10	1.05	1.03	1.02	1.01	1.00	0.99	0.98	0.95
세후소득	1.17	1.10	1.05	1.03	1.02	1.01	0.99	0.99	0.98	0.95
최종소득	1.33	1.19	1.11	1.08	1.04	1.01	0.99	0.98	0.95	0.91

주: 상대비=[분위별 민간소득 대비 부담률(또는 수혜률, 소득비)]÷민간소득 대비 평균 부담률(또는 수혜률, 소득비)

<부표 5> 1조원 증세 및 지출증대의 국민부담·지출수혜의 분포

(단위: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세	1,007	4,143	9,192	17,930	26,469	38,707	58,011	82,189	111,474	239,494
부가가치세	19,193	30,650	39,628	47,482	56,222	66,325	70,944	81,424	92,444	124,646
교통세	9,480	23,230	31,925	45,496	54,382	71,897	74,422	79,509	103,890	134,745
담배소비세	33,880	52,657	60,685	64,004	63,077	77,855	61,279	79,427	68,440	67,664
건강보험료	36,276	40,857	46,784	50,327	54,832	61,005	66,663	74,423	86,464	111,327
부담합계	-99,836	-151,537	-188,214	-225,239	-254,982	-315,789	-331,319	-396,972	-462,712	-677,876
기초생활보장	628,930	0	0	0	0	0	0	0	0	0
건강보험	31,479	39,377	51,079	55,139	57,080	58,386	67,226	80,401	74,750	114,011
교육	34,419	53,744	58,218	68,825	68,844	69,279	72,940	72,188	65,352	65,120
영유아 보육	134,500	171,530	142,081	87,487	16,870	14,921	17,670	15,520	18,068	10,283
주택	163,366	141,570	126,860	51,550	48,124	37,019	37,989	15,134	4,518	2,801
혜택합계	992,694	406,222	378,237	263,001	190,918	179,605	195,825	183,243	162,689	192,215
손익	892,858	254,685	190,023	37,762	-64,064	-136,184	-135,494	-213,729	-300,023	-485,661

[Abstract]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es and Transfers Including Consumption Taxes and In-kind Benefits

Myung Jae Sung-Ki Baek Park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es and transfers was estimated to be 17.7% in 2006. Income tax and benefits in-kind attributes to 10.5%p of the whole effects. However, consumption taxes had negative effect as much as -0.37%p. According to policy simulations, for example, additional expenditure on education financed by increased income tax generates positive redistributive effect with a wide range of net benefits in lower 70% of households. Simulation also suggests that additional expenditure mostly targeted to the poor generally have strong redistributive effect and, however, that it is less likely to be adopted since majority of households face net losses.

Keywords: income distribution, taxes, cash benefits, in-kind benefits, policy simulation

JEL Code: D3, H2, H5, I3